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6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 박성훈·이상휘·이헌승

안상훈 • 박충권 • 백종헌

조지연 · 정연욱 · 김대식

서지영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 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휴가제도의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암묵적·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승진·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 다.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의2제1항).

- 마.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제4항).
- 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558호 시행(2019. 10. 1.)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19조의2의 개정규정 및제19조의4를 적용하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20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③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u>90</u>	<u>120</u>
<u>일</u> 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일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 에 한	<u>(4) ব্রই</u>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제19조(육아휴직) ①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u>만 8세</u> 이	<u>용세</u>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	
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 <u><단서 신설></u>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③ (생 략)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

4

②
<u>다만, 같은 자녀를 대</u>
<u>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u>
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
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
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u>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u>12</u> 州 이
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하 "육아기"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 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 으면 그 <u>기간을</u> 가산한 기간 이 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생략)
-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 ② <u>국가는</u> 소속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 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